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79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김은혜 · 김미애 · 김소희
윤상현 · 김선교 · 조배숙
김성원 · 엄태영 · 송언석
김승수 · 권성동 · 고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련되는 施設과 이에 준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91조 중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2條(暴力行爲등의 금지) ①爭議行爲는 暴力이나 破壞行爲 또는 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련되는 施設과 이에 준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占據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①使用者는 爭議行爲 기간중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者를 採用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使用者는 爭議行爲期間중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業務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使用者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	第42條(暴力行爲등의 금지) ①--- ----- ---사업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u>하지 아니한다.</u> <u>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u>제43조제1항·제2항·제4항</u>,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 -----<u>제45조</u> <u>제2항</u>----- ----- ----- -----.
--	--